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정번호	6-3-13
		제정일자	2007.02.14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3 총페이지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연구소의 개별 규칙이 이 규칙과 다를 경우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 2 장 설 립

제3조(설립조건) 연구소의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연구소가 담당하지 않는 영역의 연구, 교육 등의 사업 수행
2. 기타 총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4조(설립신청) ①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본 대학 전임교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다음 서류를 준비, 소속 학부(과)장과 산학협력단을 경유, 총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설립 취지 및 목적
 2. 연구, 교육 및 사업 분야 및 계획
 3. 설립의 필요성 및 배경(기존 연구소를 활용하기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
 4. 참여교원 명단, 담당분야 및 조직도
 5. 연구소 규칙(안)
 6. 연구소 관련 인프라(시설, 인력 및 예산 등의 현재 확보 현황 또는 확보 방안)
 7. 기타 연구소 설립에 관한 참고 자료
- ② 제1항의 연구소 규칙에는 명칭, 목적, 사업, 위치, 조직, 운영위원회, 재정, 해산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③ 연구소는 연구소, 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총장이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5조(설립 심의 및 인가) ①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설립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학부장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② 연구소의 설립 인가는 학부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가한다.

제 3 장 조 직

제6조(운영위원장) 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 교원, 기타 요원 등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연구소 운영위원회) 연구소는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규칙의 신설, 개정 및 폐지
2. 연구소 예산 및 결산 심의
3. 연구소 요원의 임용 승인
4. 기타 연구소에 대한 중요 사항

제 4 장 운 영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를 이용해서 충당한다.

1. 정부, 지자체,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2. 교육과정운영, 기자재 대여 등 산학협력을 이용한 수입
3. 연구소 인센티브
4.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
5. 기타 수입

제9조(재정 관리) ① 연구소의 예·결산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대한 회계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평 가

제10조(평가) ① 연구소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소를 평가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필요시 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 또는 감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결과 적용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 6 장 폐 지

제11조(폐지 절차 및 조건) ① 연구소가 폐지될 경우에 잔여 재산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로 편입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연구소 폐지에 대한 심의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부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연구소의 폐지는 학부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가한다.
-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폐지한다.

1. 연구소 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2.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3. 연구소가 자진해서 폐지를 결정한 경우
4. 기타 총장이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설립된 연구소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립, 운영된 것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